

제236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노인요양
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24년 5 월 17 일

여 수 시 장



여수시 조례 제2086호

붙임 여수시 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

여수시 조례 제2086호

여수시 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

여수시 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.

제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자

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7조(입소비용) 입소에 따른 비용은 「노인복지법」 및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기능) ① (생 략)</p> <p>제5조(입소대상) 요양시설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생 략) 2. 65세 이상의 사람 중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3. (생 략) <p>제7조(입소비용) ①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 이용시 시설급여 비용은 해당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20%를 본인이 부담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본인 일부부담금 전액을 면제한다. 2.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 일부 부담금의 50%를 감경한다. <p>② 제5조제2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의 비용은 시장이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 할 수 있다</p>	<p>제3조(기능) (현행 제1항과 같음)</p> <p>제5조(입소대상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현행과 같음) 2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3. (현행과 같음) <p>제7조(입소비용) 입소에 따른 비용은 「노인복지법」 및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p>